

<붙임>

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

①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이면 외부감사 대상이 될 수 있음

- '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'상 외부감사 대상회사는 직전 사업연도말 자산총액 120억원* 이상인 경우만 해당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사례가 많음

* '14.9월 외감법 시행령 개정으로 100억원에서 120억원으로 상향 되었음

-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70억원 이상인 경우 1)부채총액이 70억원 이상이거나 2)종업원수*가 300인 이상이면 외감대상임

* 종업원은 「근로자기준법」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 중 일용근로자, 3개월 이내 근로자 및 파견받은 근로자를 제외한 사람

② 외부감사인(회계법인 또는 감사반) 선임은 사업연도 개시후 4개월 이내 완료

- '15.1.1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회사(12월결산)의 감사인 선임기한은 '15.4.30.임
- 회사는 감사인과 감사계약체결후 2주일 이내('15.1.1. 사업연도를 개시하는 회사는 '15.5.14.까지) 감사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감독원에 제출*하여야 함

* 제반 서류는 서면신고 또는 외부감사보고시스템(<http://filer.fss.or.kr>)에서 전자보고 가능

※ 외부감사인 선임보고 절차는 금융감독원 회계포탈홈페이지(<http://acct.fss.or.kr>) "외부 감사인선임-외부감사인선임절차" 메뉴에서 확인 가능

③ 기한내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기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국세청 자료 등을 통해 별도 점검

- 외부감사대상 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보고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은 국세청으로부터 자산, 부채현황 등 관련 자료를 제공받아 외감대상 여부를 점검·파악하므로 자진해서 외부감사인을 선임할 필요
- 외감대상회사가 외부감사인 선임을 하지 않을 경우 증권선물위원회(금융감독원)가 지정한 감사인으로부터 외부감사를 받아야 하며, 이에 불응하는 경우 검찰고발* 조치됨

* 외감법 제20조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형 부과

〈 외부감사인 선임 위반 사례 〉

□□주식회사는 직전사업연도말 자산총액이 120억원에 미달하나 자산과 부채가 각각 70억원 이상이어서 외부감사 대상임에도 적시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외부감사인을 지정받았으나, 이에 불응하고 외부감사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다가 검찰에 고발되었다.

⇒ 외부감사 제도에 대해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금융감독원 회계포털 홈페이지(<http://acct.fss.or.kr>) 또는 금융감독원 회계제도팀(02-3145-7763)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